

「'24년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모집 공고」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e-모빌리티 정의로운 전환 산업 생태계 고도화 사업」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 및 경주시, 안동시가 지원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주시, 안동시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북도지사, 경주시장, 안동시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경주시, 안동시 e-모빌리티부품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한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및 매출 창출
- **(지원규모)** 총 약 4.76억원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25.10.31. 까지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간접지원(지원기관 → 공급기관(업)으로 사업비 입금)의 방법으로 지원 * 프로그램별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경주시, 안동시 소재(본사, 공장 기준)한 중소기업으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전략소재(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적용 e-모빌리티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6개 프로그램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기관명
사업화 지원	시제품제작지원	▪ 시제품 제작관련 비용 지원, 인프라 및 기술지원	경북 테크노파크 (경주시 지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안동시 지원)
	제품고도화지원	▪ 공정개선, 제품 품질 개선 등 제품고도화 지원	
	공백기술도출지원	▪ 공백기술도출 및 특허출원 지원	
	유망기업 전문컨설팅지원	▪ 기업 성장 및 사업화에 필요한 전략 수립 지원 ▪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소재, 공정, 기술 정보 지원	
	마케팅지원	▪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 부스임차료, 장치 설치비, 집기 대여비 등 ※부스 참여 없는 전시회 참가비 지원 제외 ▪ 홍보물 제작 지원 · 제품 판로개척 및 시장 확대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홍보영상, 상세페이지, 리플렛 및 카탈로그 등)	경북 테크노파크 (경주시 지원)
	인증지원(국내)	▪ 국내 공인인증·시험 기관을 통한 제품 인증 및 시험 지원	

※ 시제품 제작 시 자산성 금형 제작, 장비 및 기구, 범용 소프트웨어의 구매는 지원하지 않음

○ (최대지원금액 및 선정건수)

구분	프로그램명	최대지원금 (현금, 천원)	선정건수		기업 부담금
			경주시	안동시	
사업화 지원	시제품제작지원	25,000	1건 내외	-	* '24년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5%), 10억원 이상(10%) 자부담 필수
	제품고도화 지원	20,000	2건 내외	1건 내외	
	공백기술도출 지원	10,000	1건 내외	1건 내외	
	유망기업 전문컨설팅 지원	2,000	3건 내외	2건 내외	
	마케팅 지원	5,000	2건 내외	-	
	인증 지원	3,000	2건 내외	-	

※ 프로그램별 복수지원 가능(단, 지원금액 20,000천원 이상 지원프로그램은 중복지원 불가,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이내 지원)

- 예)시제품제작지원+제품고도화지원(X), 시제품제작지원+마케팅지원(O), 신기술-신제품지원+공백기술도출지원(O)

※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 및 세부 지원 건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은 공급가액만을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임

- 기업부담금(현금): 기업지원 금액의 10% 이내 기업 자부담 필수

* '24년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10% 자부담

○ (지원제외 대상) 아래 참여제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후 제외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사전제외대상: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① **부도업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 ②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 ③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최근 연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신용등급'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⑤ **최근 연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⑦ **신청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
- ⑧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⑨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②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5. 6. 4.(수) ~ 6. 23.(월)
- **(접수기간)** 2025. 6. 4.(수) ~ 6. 23.(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SMTECH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접수(www.smtech.go.kr/region/rms)
- **(제출서류)** ③ 제출서류 참조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① 사업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서 [서식2] ※ 복수 지원 시 지원프로그램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 ③ 기업·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3] ④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4] ⑤ 중복지원금지 협약서 [서식5] ⑥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서식6]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최근 3개년 재무제표(창업3년 미만기업: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 일반과세자에 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대체 가능 ⑨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⑩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⑪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선택	⑫ 수출실적증빙(직접수출, 간접수출) ⑬ 공장등록증 사본 ⑭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서류 ⑮ 우대가점 증빙자료 ⑯ 기타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제품, 기술 홍보자료 등)

4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중복지원, 사업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면담/현장실태조사(해당 시) → 선정평가(필수)
- **(평가기준)** 사전검토, 면담/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를 진행하며, 선정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수혜기업으로 선정가능

항목	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40)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10점
	○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20점
	○ 기업 보유기술 및 연구역량	10점
지원내용의 타당성 (35)	○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25점
	○ 지원금액의 적정성(공급기관 및 단가의 구체성)	10점
기대효과 (25)	○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15점
	○ 고용 및 매출 증대	10점
가점	우대가점 참조	최대 3점
계		103점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구분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1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기업	경북테크노파크 확인	3
2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1
3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인증서	2
4	원산지 인증수출자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1
5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경북테크노파크 확인	2
6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지역 내 공급기관(업) 활용으로 지역기업간 협업 및 공동성장 활성화 일환)	컨소시엄 유무	1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선정평가 우대가점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 과제종료 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주관기관에서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 중인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및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입금
 - 기업 자부담금은 공급가액의 10% 이상 필수, 지원금 및 자부담에 대한 부가세는 전액 기업부담이 원칙
- * 단, 매출액 기준 1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지원금액의 5% 이상 자부담

ex) 지원금이 20,000천원일 경우 예시

※ 기업 자부담+부가세(B+C): 4,200천원

(단위: 천원)

경북TP 지원금	기업 자부담	합계	(지원금+자부담)의 부가세	총합
A	B	A+B	C	A+B+C
20,000	2,000	22,000	2,200	24,200

수행주체	수행내역	금액(예시)
① 공급기관(업) → 수혜기업	총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24,200천원
② 수혜기업 → 공급기관(업)	자부담+부가세 입금	4,200천원
③ 수혜기업 → 경북TP, KIRO	총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자부담+부가세 입금증, 결과보고서 제출	-
④ 경북TP → 공급기관(업)	지원금 이체	20,000천원

* 단, 전시회 참가, 인증지원의 경우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은 사업완료(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 일부 프로그램 및 지원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
- (중요)사업신청 접수는 SMTECH 기업지원시스템(www.smtech.go.kr/region/rms)을 통한 전산 접수로만 시행되므로, 반드시 접수방법 사전 숙지 및 접수시간 준수
-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서류 및 내용을 꼭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 하며, 지원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프로그램 신청요망

6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 담당기관: (재)경북테크노파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지원기업: 수혜기업

○ (사전검토) 중복지원, 사업참여제한 등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고 공고 상 명시된 사전제외대상 여부, 우대가점 증빙자료 검토 후 평가대상 여부 최종 확인

- 「'24년 시군구연구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의 “우대가점”에 따라 가점 확인 (최대 3점 인정)

○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을 목적으로 신청기업의 실체 등의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실시(필요시 실시)

구분	점검방식	수행주체
현장실태조사 (대면)	신청기업 방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기업지원 수행역량 등 확인	평가위원 및 담당자
서면실태조사 (비대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서 등) 및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조직도, 구성원 현황 등)를 별도 제출받아 확인	
면담조사 (대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신청서 등) 및 대면 질의응답(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을 통해 확인	

- **(선정평가)** 선정·평가 과정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위원회 진행, 결과의 정리 순으로 진행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결과통보)**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결과를 전문기관으로부터 확정된 결과에 따라 신청기업에게 선정결과 개별 통보
-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사업 실적, 성과 등 결과물은 협약서에 기재된 기한까지 제출(~25. 10. 31.)
 -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이체내역 등) 제출 필수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선정된 수행과제에 대한 달성여부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
 - (필독)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사업목표달성 여부를 평가 후 지원금 지급
- **(성과조사)** 사업 종료 후 후속 성과조사와 관리 실시 예정
 - 과제종료 후, 수혜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6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7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별 담당자 및 시스템 문의처

구 분	담당기관		연락처
공고 및 과제 관련 문의	(재)경북테크노파크 (경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화&성장촉진 • 사업화지원 • 패키지 	054-750-3704 happy@gbtp.or.kr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안동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지원 	054-820-2841~2842 hyyun@kiro.re.kr / pjhkh9191@kiro.re.kr
회원가입 및 시스템 관련 문의	SMTECH		국번없이 1357
RMS 시스템관련 문의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RMS 로그인 → 소통관리 → 문의글 작성		